

창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43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432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소95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태식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황규훈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소9535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31. 17: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평산사거리에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차량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다툼에 관한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F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100%로, 심의결정금액을 618,500원(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금액'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협정 제26조 제2항("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심의결정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0. 31. 17:10경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618,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심의결정금액은 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구상금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인 2019. 10. 4.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위 구상금 심의결정에 따라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를 다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위 이의 마감일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10.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분쟁 발생 당시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 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바(을 제2호증의 1 참조), 그 당시 현장에서 보기에다 차량의 충돌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②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피고의 직원에게 자차 영상(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나(을 제2호증의 1 참조), 그와 같은 영상이 구상금 분쟁 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 ③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참조)에 의하더라도 두 차량이 접촉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 ④ 피고 차량 뒷범퍼 우측에 보이는 흠집(을 제3호증의 7)은 위 ③항의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차량의 정차 형태(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뒷번호판을 기준으로 다소 좌측으로 치우쳐서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피고 차량 뒷범퍼 좌측과 뒷번호판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번호판 자체는 피고 차량의 수리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⑥ 피고 차량은 2007년 등록되어 28만km 이상 운행된 차량인바, 설령 피고 차량 뒷범퍼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은 과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6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제1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를 항소심에서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소심까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강희구 판사 양철순